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1
----------	-----

2022.12.16.(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지현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2년 11월 18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1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12월 1일

-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지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조례에서 규정한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행위제한 및 자연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지속가능한 자연환경보전을 이루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생태·환경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
- 생태·환경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자연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7조)

3. 검토보고 요지(김홍식 수석전문위원)

- 안 제4조는 생태·환경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구체화하였음.
- 안 제6조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도지사의 권한을 추가하여 생태·환경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7조는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 정비 및 자연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일부를 신설(제3항 제1호, 제6호, 제7호)하고 그 밖에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음.
- 관련부서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음.
- 기타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예고(‘22. 11.23. ~ ‘22. 11.29.)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을 구체화하고, 그 지역의 행위제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과 자연환경조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자연경관” 을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 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행위

제1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1호) 중 “야생생물” 을 “야생동·식물” 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3호) 중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야생생물” 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중전의 제6호) 중 “도지사가 자연환경” 을 “자연환경” 으로, “있다고” 를 “있다고 도지사가” 로 한다.

1. 산·하천·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6.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현황
7. 농작물·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p> <p>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충청북도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u></p> <p>② ~ ⑤ (생략)</p> <p>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 4. (생략)</p> <p><u><신 설></u></p>	<p>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p> <p>①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도지</u></p>

② (생 략)

제17조(자연환경조사)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 황

2. (생 략)

3.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 현황

<신 설>

<신 설>

4. (생 략)

5. (생 략)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생 략)

사가 정하는 행위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자연환경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산·하천·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3. 야생동·식물-----

4. (현행 제2호와 같음)

5.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

--

6.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현황

7. 농작물·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2. (현행 제4호와 같음)

8. (현행 제5호와 같음)

9. ----- 자연환경-----

----- 있다고 도지사가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생태·경관보전지역)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 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移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울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注入)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행위

-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2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하천·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4.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녹지등급
5. 식생현황
6.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7.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현황
8. 농작물·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9. 토양의 특성
10.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